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2000. 10. 1

정 보 통 신 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2000.10. 1\(전부개정\)](#)

1. 개 요

가. 제도시행의 목적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을 활성화하고자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함

나. 추진경과

- 공청회 개최('99. 4.20)
- 기본계획수립('99. 4.22)
- 업무처리지침 확정 및 체신청 통보('99. 5.13)
- 체신청 실무직원 교육 실시('99. 5.18)
- 주택건설업체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99. 6. 4)
- 예비인증과 오피스텔기준 제정(200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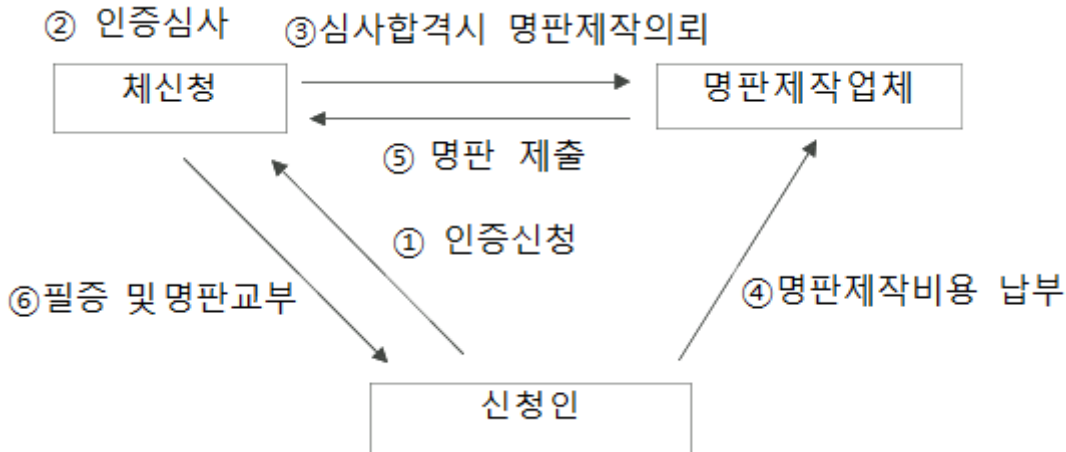
다. 인증필증 교부절차

- 정보통신부장관 직인의 인증필증은 정보통신부 본부에서 인쇄하여 체신청으로 일괄 배포함
- 체신청은 인증심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인증필증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인증필증을 교부함
- 인증필증, 인증명판의 인증번호 형식 및 예시

- 필증번호 형식: 제 연도-체신청번호-일련번호 호
- 명판번호 형식: 정보통신부 제 연도-체신청번호-일련번호 호
- 필증번호 예시: 제 99-7-012 호
- 명판번호 예시: 정보통신부 제 99-7-012 호
(’99년도에 강원청에서 12번째로 부여하는 인증번호)

라. 인증명판 부여절차

- o 체신청은 인증심사 합격시 신청인에게 인증명판을 교부함
 - 명판제작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o 각 체신청은 통일된 규격의 인증명판을 안정적으로 교부하기 위해 협약 등을 통해 인증명판 제작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 o 인증명판 교부절차 흐름도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지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제2항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 또는 제10항 업무시설 중 3,3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2. '업무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3. '정식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4.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도서를 심사 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5. '인증'이라 함은 위의 제3호와 제4호에서 정의한 정식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말한다.
6. '건축주'는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건축물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주 대표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별첨 2의 용어 정의 및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 고시(제2000-16호, 2000년 2월 25일)를 따른다.

제 2 장 신 청

제4조(신청인)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시기) ①신청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은 건축허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고,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은 예비인증 신청서상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에 정식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2002. 2. 개정)

②정식인증은 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사용전검사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2002. 2. 개정)

제6조(신청접수) 신청인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체신청장은 인증 신청접수 및 심사 등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

으로부터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정식인증 합격시 부여하는 인증명판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처리기간) ①체신청장은 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체신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심 사

제10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공동주택용,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용 및 준3등급용으로 구분되며 별첨1과 같다.(2002. 2. 개정)

제11조(심사방법) ①심사자는 정식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제10조의 심사기준을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육안검사항목은 해당설비와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2. 공동주택의 링크성능은 건축물의 각 동별로 4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 3. 업무시설의 링크성능은 각 동별로 20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 4. 육안검사 및 측정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한 심사항목은 설계도서 및 자재사용내역에 대해 점검한다.
 - ②심사자는 예비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에 대한 서류 검사를 통해 심사한다.
 - ③심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심사서에 기록하고 심사항목 전체가 적합할 경우에 합격 처리한다.

제12조(합격처리) ①체신청장은 정식인증 심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필증과 별지 제4호 양식의 인증명판을 교부한다.

②체신청장은 예비인증 심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에게 예비인증에 통과되었음을 문서로써 통보하며 인증필증 또는 인증명판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불합격처리) ①체신청장은 인증 심사에서 불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함께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불합격 처리된 건축물에 대해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서에 대한 보완 후 인증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 4 장 관 리

제14조(예비인증의 효력) ①건축물이 예비인증을 통과하였다 함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될 경우 해당 등급의 성능, 규모, 규격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②신청인은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신문, 방송, 견본주택 등에 인증마크(엠블럼)를 활용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정식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명판) 체신청장은 정식인증을 획득한 건물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명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증명판제작 전담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부당광고) ①체신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게재 여부에 대해 반기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체신청장은 제1항에 의해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건축주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고, 명단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예비인증 신청서상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에 정식인증을 신청하지 못할경우 그 사유를 동일 기한 내에 입주자등 이해관계자와 해당 체신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 2. 개정)

④체신청장은 신청인이 제③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정식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을때 이 사실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다.(2002. 2. 개정)

제17조(통계관리) ①정보화기획실장은 매분기별로 지역별, 등급별 신청접수 및 심사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신청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신청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별표 1]

인증 심사 기준

1. 공동주택(1, 2, 3등급)

심사항목		요건			심사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배선설비	배선방식(세대내)		성형배선			설계도서 및 육안 검사
	케이블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Cat3 이상	Cat3 이상	세대당 인입회선수에 대한 육안 검사
		건물간선계	Cat5 이상		Cat3 이상	
		수평배선계	Cat5 8pair 이상	Cat5 4pair 이상	Cat3 4pair 이상	
	접속자재 등급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이상			육안검사
	세대별 단자함		설치			육안검사
	예비단자확보		필요한 회선수의 20% 이상		필요한 회선수의 10% 이상	육안검사
	인출구	실별 인출구수	2개 이상	1개 이상		육안검사
인출구 형태		8핀모듈러적			육안검사	
배관설비	구조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설계도서 및 육안검사
	종류 및 규격		기술표준 적합			기술표준에 부합시공여부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설계도 검사 및 육안검사
		수량	1공 이상			
형태		PVC관, 닥트, 트레이 등				
규격		최대 굵기의 주배관의 굵기 이상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위치	지상		지하설치가능	육안검사
		~ 500세대	15㎡ 이상	10㎡ 이상	10㎡ 이상	줄자에 의한 실측
		~ 1,000세대	20㎡ 이상	15㎡ 이상	15㎡ 이상	
		~ 1,500세대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 2,000세대	30㎡ 이상	25㎡ 이상	25㎡ 이상	
	2,000세대 ~	30㎡ 이상	25㎡ 이상	25㎡ 이상		
환경·관리		상온·상습장치 등의 설치공간 환경 마련 및 시건장치 설치				육안검사
링크성능 (동단자함 ~ 인출구)		CLASS D 이상(100MHz)	CLASS C 이상(16MHz)	CLASS B 이상(1MHz)	측정장비에 의한 실측	
도면 관리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보유여부 확인

2. 업무시설(1, 2, 3등급)

심사항목		요건			심사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배선설비	배선방식(세대내)		성형배선			설계도서 및 육안 검사	
	케이블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Cat5 이상	Cat3 이상	세대당 인입회선수에 대한 육안 검사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광케이블 또는 Cat5 이상	Cat3 이상		
		수평배선계	광케이블 1조 및 Cat5 8pair 이상	Cat5 8pair 이상	Cat3 8pair 이상		
	접속자재 등급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이상			육안검사	
	배선반의 예비단자 확보		설치			육안검사	
			필요한 회선수의 30% 이상	필요한 회선수의 20% 이상	필요한 회선수의 10% 이상	육안검사	
	인출구	단위면적당 인출구수	3개 이상	2개 이상		10㎡ 당 설치개수 확인	
인출구 형태		8핀모듈러잭:2개 광케이블용:1조	8핀모듈러잭		육안검사		
배관설비	구조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설계도서 및 육안검사	
	종류 및 규격		기술표준 적합			기술표준에 부합시공여부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설계도 검사 및 육안검사
		수량	3공 이상	2공 이상			
		형태	PVC관, 닥트, 트레이 등				
규격		최대 굵기의 주배관의 굵기 이상					
구내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	지상 설치		지하가능	육안검사		
	층통신실(장비실) 면적 등	기술기준 적합				줄자에 의한 실측	
	환경·관리	상온·상습장치 등의 설치공간 환경 마련 및 시건장치 설치				육안검사	
링크성능 (동단자함 ~ 인출구)		CLASS D 이상(100MHz)	CLASS D 이상(100MHz)	CLASS C 이상(16MHz)	측정장비에 의한 실측		
도면 관리		배선, 배관 등 도면			보유여부 확인		

3. 오피스텔(1, 2, 3등급. 2002. 2 제정)

심사항목		요건			심사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배선설비	배선방식(세대내)		성형배선			설계도서 및 육안 검사
	케이블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Cat3 이상	광케이블, Cat3 이상	Cat3 이상	세대당 인입회선수에 대한 육안 검사
		건물간선계	Cat5 이상	Cat5 이상	Cat3 이상	
		수평배선계	Cat5 4pair x 3 이상	Cat5 4pair x 2 이상	Cat3 4pair x 1 이상	
	접속자재 등급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이상			육안검사
	세대별 단자함		접지형 전원시설 및 단자함 설치(분양단위)		단자함 설치(분양단위)	육안검사
	인출구	단위면적당 인출구수	1.5개 이상	1.2개 이상	1개 이상	전용면적 10㎡ 당 확인(소숫점 이하는 올림)
인출구 형태		8핀모듈러잭			육안검사	
배관설비	구조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설계도서 및 육안검사
	종류 및 규격		기술표준 적합			기술표준에 부합시공여부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설계도 검사 및 육안검사
		수량	1공 이상			
		형태	PVC관, 닥트, 트레이 등			
규격		최대 굵기의 주배관의 굵기 이상				
구내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	지상 설치		지하가능	육안검사	
	층통신실(장비실) 면적 등	업무시설 기준과 동일 기준			출자에 의한 실측	
	환경·관리	상온·상습장치 등의 설치공간 환경 마련 및 시건장치 설치			육안검사	
링크성능(동단자함 ~ 인출구)		CLASS D 이상(100MHz)	CLASS D 이상(100MHz)	CLASS C 이상(16MHz)	측정장비에 의한 실측	
도면 관리		배선, 배관 등 도면			보유여부 확인	

4. 공동주택 준3등급 심사기준

심사항목		요건	심사방법
배선설비	케이블	3등급 요건	육안검사
	인출구	3등급 요건	
배관설비	예비배관	1공 이상	육안검사
통신실	면적	3등급 요건	육안검사, 줄자실측 등
광가입자망 구축		광전송장비(FLC 등) 설치	육안검사
서비스 제공속도		세대당 1.5Mbps(평균)	건축물 각 동별로 4개소 이상에 대한 실측(file downloading 속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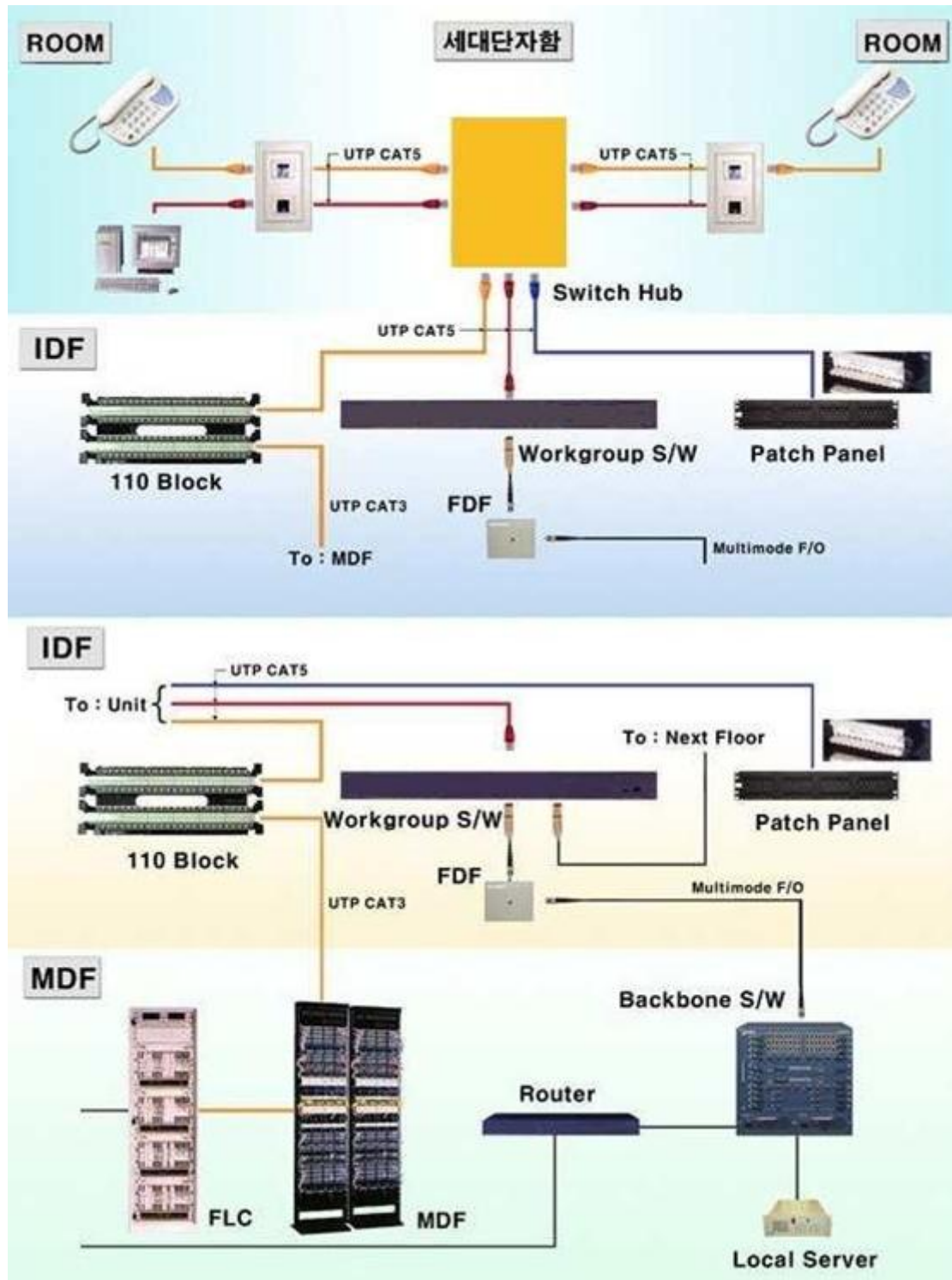
[별표 2] 심사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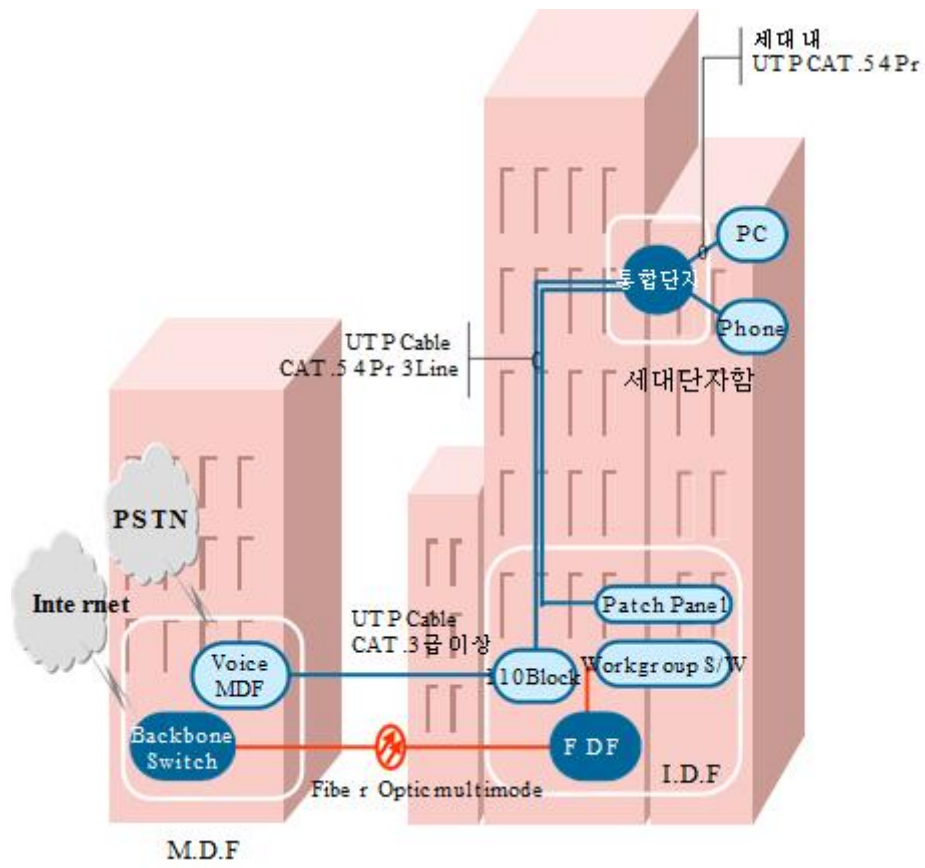
1. 건물 용도가 다른 주상·주거복합 건물의 경우 건물 용도별로 인증을 신청·획득할 수 있다.
2. 인증심사시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또는 가동여부는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동단지함내 단자대는 IN/OUT을 분리하여야 한다.
4. 광케이블은 송신·수신 각 1Core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숙사 또는 원룸의 경우 세대단지함을 생략할 수 있다.
6. 세대단지함 내에 네트워크기능을 갖는 통합단자반 및 접지형 전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용어 정의

1. '배선체계'라 함은 건축물의 두 지점간을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 접속자재, 배선반, 인출구의 배치 및 구성 방식을 말한다.
2. '인입회선수'라 함은 층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으로 인입되는 광케이블 또는 UTP 케이블의 가닥수를 말한다.
3. '접속자재'라 함은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를 구성하는 배선반, 커넥터, 점퍼코드 등의 접속설비를 말한다.
4. '예비단자'라 함은 국선단자함, 동단자함, 층단자함, 세대단자함 등의 단자함에 향후 회선증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사용되는 것 이상으로 보유하는 단자를 말한다.
5. '인출구'라 함은 각 실별(공동주택) 또는 단위면적당 (업무시설)에 설치되어 단말 장비와 연결되는 최종적인 접속자재로서 모듈러잭 또는 광커넥터를 말한다.
6. '집중구내통신실'이라 함은 구내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집중구내통신실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7. '상온·상습장치'라 함은 구내통신실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원활히 동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어컨, 환풍기, 제습기 등을 말한다.
8. '링크성능'이라 함은 특성임피던스, 반사손실, 누화 등 배선시스템의 물리적 성능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링크성능에 대한 측정은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로 한다. 업무시설의 링크성능에 대한 측정은 업무용 기술표준을 따른다.

※ 오피스텔 1등급 수성도 예시





■ 개념 및 용어 설명

가. 주거용 건물

□ 배선시스템 구성

- 구내간선계(Campus Backbone Cabling System) :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건물간 구간)를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 건물간선계(Building Backbone Cabling Subsystem) :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 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다른층의 층단자함까지(건물내 수직구간)를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 수평배선계(Horizontal Cabling Subsystem) :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 (건물내 수평구간)를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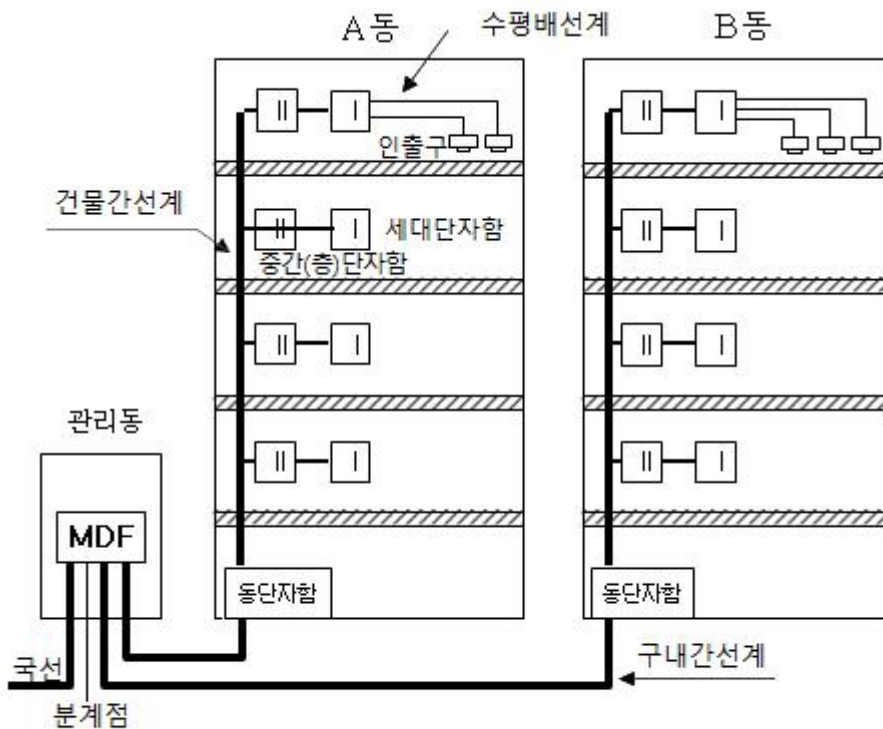


그림1. 주거용 건물의 배선 시스템 구성

□ 회선수 기준

- 회선 개념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회선수 기준을 페어(pair) 단 위로 정함
- 주거용건물의 인입회선수 기준은 중간(층)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회선수 이며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는 동종의 케이블을 각 인출구로 배선하여 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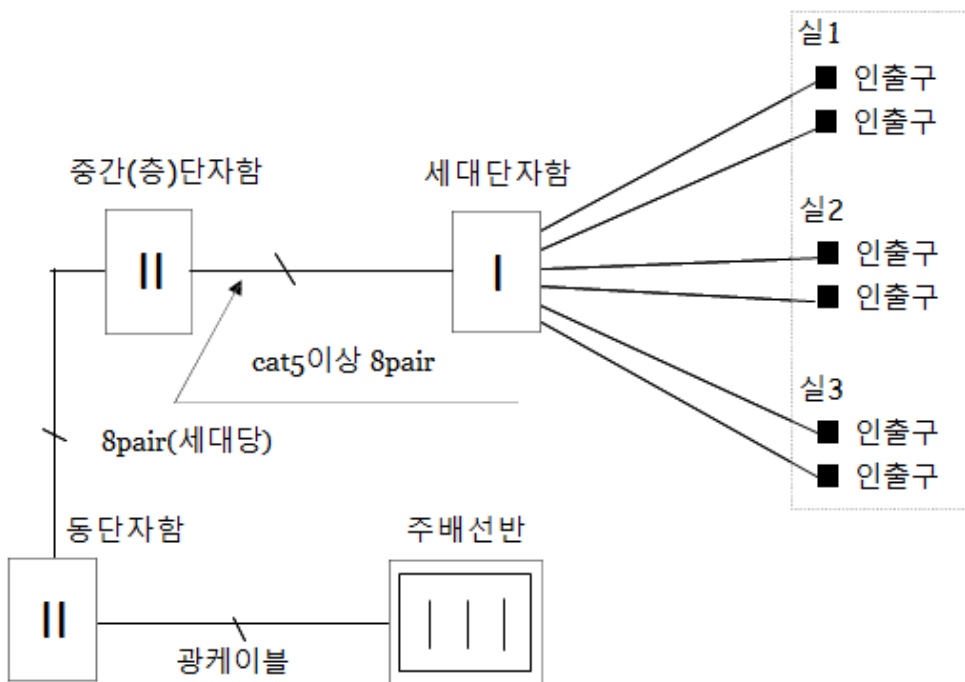


그림2. 주거용 건물의 배선시스템 예시(1등급 기준)

□ 배선반 등의 예비회선시설 확보

- 동/층/세대단자함의 예비단자를 확보하라는 의미이며 실제 배선 여부와는 관련없음

□ 인출구수

- 각 실별 인출구수가 2구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를 개별로 각각 배선하여야 함

※ 단, 2구 이상을 1개소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음

□ 예비 배관

- 국선에서 최초로 건물내에 인입되는 인입배관·구내 및 건물간선계에 시설되는 통신용 배관으로 현재 필요한 배관외의 유지보수 및 장래확장용을 말함

□ 배관시설의 규격

- 인입배관 및 인입관로(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국선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공동구나 관로를 말한다)는 장래의 확장을 고려하여 수용될 케이블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하며,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관로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전선관 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함

□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 아파트의 구내선로 링크성능의 측정구간은 동단지함에서 세대내의 인출구사이로 한다.

나. 업무용 건물

□ 배선시스템 구성

- 구내간선계(Campus Backbone Cabling System): 구내간선계는 구내배선반에서 각 건물에 위치하는 건물배선반까지로 구성됨.
구내간선케이블은 건물배선반간에도 연결됨
- 건물간선계(Building Backbone Cabling Subsystem): 건물간선계는 건물배선반에서 층배선반까지로 구성됨
- 수평배선계(Horizontal Cabling Subsystem): 수평배선계는 층배선반에서 인출구까지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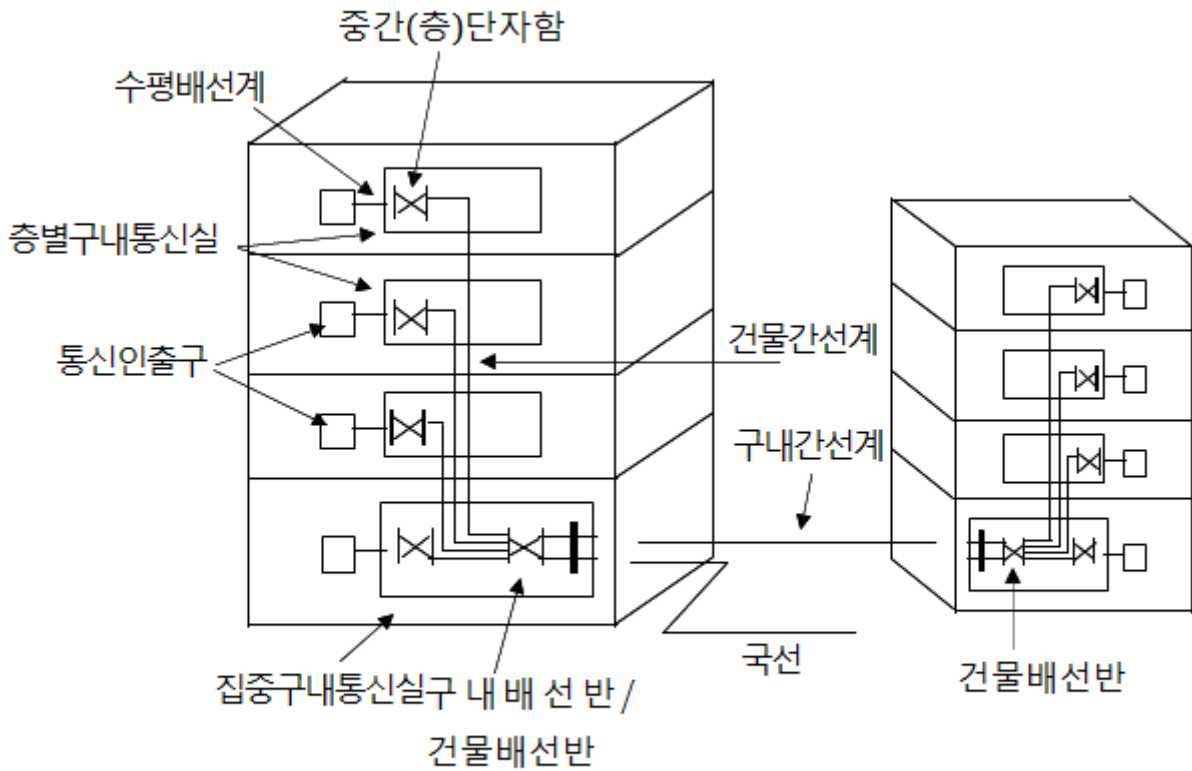


그림 3. 업무용건물의 배선시스템 구성

□ 구내간선계/건물간선계의 케이블

- 음성과 데이터시스템(LAN 등)이 운용되고 있는 업무용 건물의 구내 및 건물 간선계의 사용케이블은 데이터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 수평배선계(10m²당) 케이블수

- 업무구역당(10m²) 수용되는 케이블수를 말함

※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단위구역을 6~8m²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 배선반 등의 예비회선시설 확보

- 업무구역당(10m²) 회선수를 기준으로 10%~30% 확보

□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 측정구간 : 그림 4의 링크배선구간을 시험장비로 측정

- E = 층배선함 내의 장비
- C = 접속
- T = 작업구역 내의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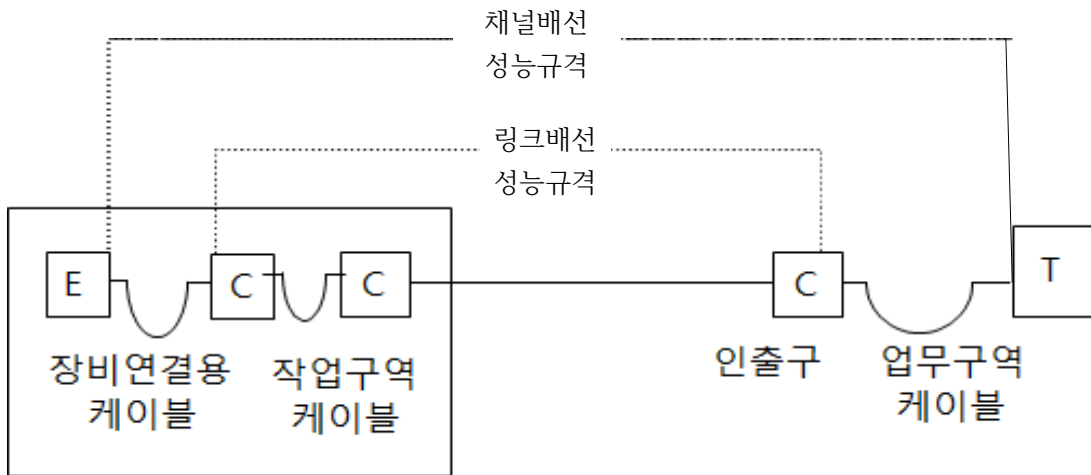


그림 4. 구내선로의 링크성능측정

□ 기타항목은 주거용건물의 기준에 준함

다. 주거용/업무용 심사기준 적용요령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별표] 규정의 "11-업무시설" 중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무용 심사기준을 적용함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별표1] 규정의 " 2-공동주택" 중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 심사기준을 적용함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 의료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공공시설, 오피스텔 등

의 건축물로서 한 건물내에 주거와 사무실 용도를 함께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업무용, 주거용 심사기준을 분리 적용함

라. 준3등급 인증절차

□ 준3등급 신청요령

- 신청인은 인증신청서의 신청등급란에 '4. 준3등급'을 표기하여 준3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준3등급 인증기준

- 건물 분계점까지 광케이블이 인입되고 집중구내통신실에 광단국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 건물구내에서는 xDSL 등의 가입자 접속기술 활용하여 각 가입자당 1.5 Mbps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준3등급 심사요령

○ 심사방법

- 건물규모에 따라 5~10곳의 가입자단말에서 건물구내 밖의 서버로부터 화일 내려받기(file downloading)를 수행하여 1.5 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지 를 검사하여 준3등급 인증여부 결정

○ 심사결과 기록

- 심사자는 종합심사서의 심사자소견란에 광케이블인입/광단국설치여부, 가입자접속기술, 서비스속도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예 시

광케이블인입/광단국설치여부 : 인입/설치

가입자 접속기술 : FTTC(광케이블 + ADSL)

서비스 속도: 2.2Mbps

□ 준3등급 엠블럼 및 인증명판

- 준3등급 엠블럼(인증마크)은 별색깔이 은색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3등급 엠블럼과 같음

- 준3등급 인증명판은 별색깔이 은색이고 내부분안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라는 점을 제외하고 3등급 인증명판과 같음

□ 업무용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1호관련)

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 보 면 적
1.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가. 집중구내 통신실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나. 층구내통신실	(1)각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각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8.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각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6.6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각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4제곱미터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제1항 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비 고 : 1. 동일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제1호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4.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